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128호

나. 발 의 자 : 채수지 의원

다. 발의일자 : 2023. 8. 14.

라. 회부일자 : 2023. 8. 21.

II. 주 문

-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 교사들의 사기 저하,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III. 제안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및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교사의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에 신고되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가 해제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등

나. 이 송 처 : 국회,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건의안은 2023년 8월 14일 채수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128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건의안은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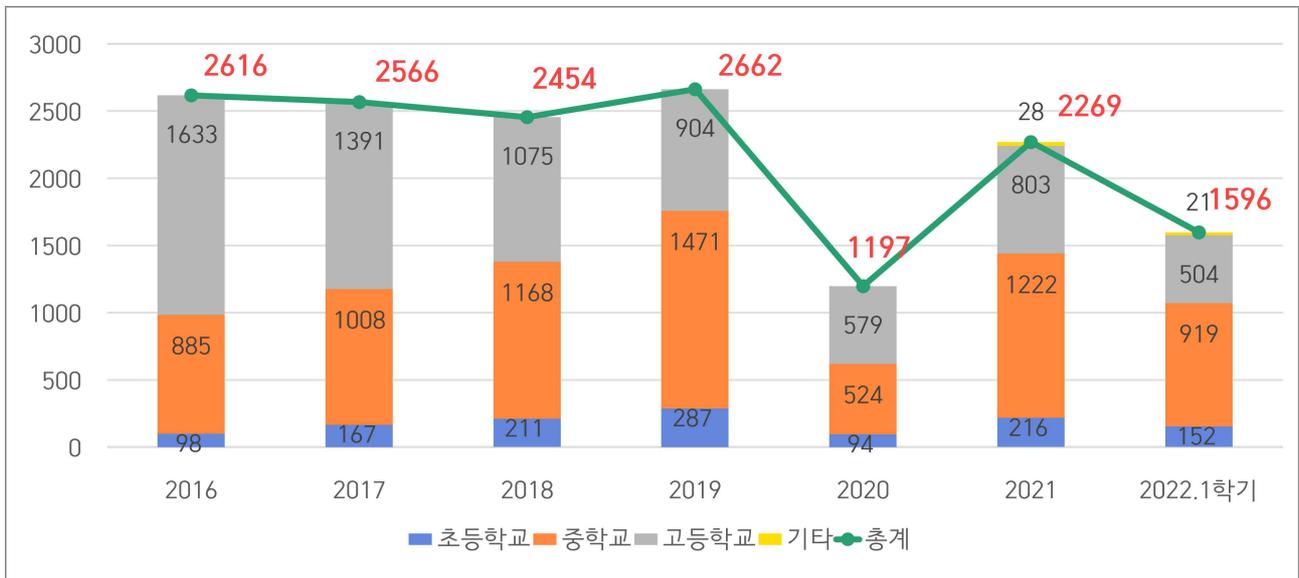
- 최근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이 침해 또는 위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전반에서 큰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거나 교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업권을 포함해 교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¹⁾ 살펴보면, 2016년 이후 2,500건 전후를 유지하던 교육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5.), 「교육활동 보호 정책포럼 :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제도 운영 진단 자료집」, 4쪽과 교육부 보도자료(2022.12.22.),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등을 종합한 것임.

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1,197건까지 감소했으나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2,269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원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급격하게 노출되었고, 이에 따른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 전국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²⁾



주) 2021학년도부터 기타(특수학교 포함)이 추가되었고, 2022년부터 유치원을 추가하여 조사됨.
2022년 "기타" 항목은 특수학교와 유치원의 총합임.

○ 또한, 지난 7월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학생의 교원 폭행과 교원의 자살 사안은 일부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해 행해진 수업 방해나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와 같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내용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되고,³⁾ 관내 한

2) 위와 같음.

3) SBS(2023.7.24.), "'제 딸도 같은 일을' 호소한 아버지...숨진 교사 일기장 공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1205 (검색일 2023.8.17.)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했음에도 교원은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원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2022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⁵⁾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공포·시행하는 등⁶⁾ 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건의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등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계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보호자 등에 의한 악성 민원 대책 마련,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사안이 동 건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원 보호’입니다.
-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교직3단체)는 서울시교육청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 정비를 요구했고,⁷⁾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관내 교원 10,7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가 1순위로 원하는 교권 보호 조치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지목하였습니다.⁸⁾

4) 해당 사건이 2023년 6월 30일에 발생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인 7월 20일에 서야 개최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자료: 서울시교육청(2023.7.27.),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현안업무보고 자료)

5) 교육부 보도자료(2022.12.22.),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6) 교육부 보도자료(2023.8.17.),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7)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23.7.24.),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합의

- 여기에 더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당사자인 교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긍정적 여론이 우세하고,⁹⁾ 국회에서도 2023년 5월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표]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입법 현황¹⁰⁾

연번	법률안명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자	주요 내용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2인 (2121955)	2023.05.11.	안 제10조제4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전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5인 (2123517)	2023.07.27.	교원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제25조)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2123582)	2023.08.01.	안 제10조의5, 제10조의 6을 신설하여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각각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와 재심의 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중 교원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123794)	2023.08.11.	안 제17조의3을 신설하여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의심 사안)가 발생한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교육청에 설치된 전담조직 및 전담 공무원이 이에 대한 조사 및 응급 조치를 하도록 함.

8) 서울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전달 및 적극 검토 요청(서울교사노-230052, 2023.7.31.)

9)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데 동의했고, 반대는 18.7%에 불과했음. (세계일보(2023.8.9.), 교사 아동학대 면책권 찬성 74.3%, 반대 18.7%,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9502939> (검색일 2023.8.18.))

10) 제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제출된 의안을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더욱이 지난 9월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¹⁾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동 건의안이 제안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악성 민원 등으로 위협받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범사회적 지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회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유의미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일각에서는 교원에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경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아동학대를 파악, 신고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문제 제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¹²⁾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결제출자 중 일부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이나 추가적인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보호자나 아동 등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있습니다.¹³⁾

11)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교권 보호 4대 입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2023년 9월 1일자.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21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검색일 2023.09.01.)

12) 서울신문(2023.5.28.),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 줘야할까…팽팽한 찬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8500058> (검색일 2023.8.18..)

13) 2023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입법예고가 종료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이태규 의원안(의안번호 2121955), 서동용의원안(의안번호 2123517), 김용민의원안(의안번호 2123582) 총 3건임.
이태규 의원안 입법예고(2023-05-15~2023-05-24)에 대한 7,715건의 의견 중 개정 찬성은 7,345건, 반대는 93건, 삭제/비공개 및 기타 의견은 277건으로 나타남. 또한, 서동용 의원안 입법예고

그러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2021년 기준 전체의 3.41%에 불과하고,¹⁴⁾ 국회의 입법 동향을 분석했을 때 교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입법과정에서 보호자 등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되는 과정이 선행되면 별도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교직 3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 발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였던바, 개정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6677, 2023.8.21.).¹⁵⁾

- 이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입법조사관

김지수
2180-8264

(2023-07-31~2023-08-09)에 대한 4,146건의 의견 중 개정 찬성은 849건, 반대는 3,068건, 삭제/비공개 및 기타 의견은 304건이었고, 김용민 의원안 입법예고(2023-08-04~2023-08-13)에 대한 303건의 의견 중 개정 찬성은 69건, 반대는 221건, 삭제 또는 비공개 의견은 13건으로 나타남. (자료는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http://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14) 보건복지부(2022.8.),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을 분석, 정리한 결과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8&conn_path=l2 (검색일 2023.8.18.)

15)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대외협력담당관-6677, 2023.8.21.)